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31호

「상주시 체육진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게됨.

2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의 대부 등 (안제13조)
- 대부·사용허가 (안제14조)
- 대부·사용허가 기간 (안제15조)
- 대부·사용허가의 취소 (안제1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2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제·개정 (안) | 수 정 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jh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
| | | |